

##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급()"의 의미

Meaning of the mitused in the daemyeongnyuljikhae[대명률직해]

---

저자 (Authors)	박철주 Cheol Ju Park
출처 (Source)	<a href="#">언어과학연구 38</a> , 2006.09, 23-42(20 pages) <a href="#">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38</a> , 2006.09, 23-42(2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언어과학회</a>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0760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07601</a>
APA Style	박철주 (2006).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급()"의 의미. 언어과학연구, 38, 23-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5 14:1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及’의 의미<sup>1)</sup>

박 철 주

(서강대학교)

**Cheol Ju Park. 2006. Meaning of the 及[mit] used in the *daemyeongnyuljikkae*[대명률직해].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38, 23-4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usage about adverb '及[mit]' in *daemyeongnyuljikkae*. Usage about adverb '及[mit]' with usage in modern Korean is some different to *daemyeongnyuljikkae* where it is a literature material of the medieval Korean. Adverb '及[mit]' was used with meaning of 'and/else/also', 'or', 'come to' in *daemyeongnyuljikkae*.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about the kind of analysis that we can give to these meaning. However, this present study was limited in *daemyeongnyuljikkae*. Therefore, further studies on different large scale assessments are needed.

*Key words:* *daemyeongnyuljikkae*[대명률직해], 及[mit], adverb, the medieval Korean, Modern Korean

### 1. 들머리

이두어 ‘及’은 현대국어에서 ‘및’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그런데 「대명률직해」<sup>2)</sup>에서 ‘及’은 현대국어로의 해석에 있어서 ‘및’이 지니는 ‘그 밖에’, ‘그리고’, ‘또’의 의미로만 항상 풀이 되지 않는다. ‘및’은 ‘and’의 의미이므로 나열되는 모든 것을 통합한다. 하지만 「대명률직해」에서는 구문에 따라 ‘及’이 ‘or’의 의미를 지녀 나열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는 ‘및’에 ‘or’이라는 의미가 없으며, 한문으

<sup>1)</sup> 본 논문은 2006년 5월 13일 '609돌 세종날 기념 한글학회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장소: 경기대학교)'에서 발표했던 것으로, 지면 문제상 내용을 부사 '及'에 한정하여 다루고 제목을 다소 바꾸었다. 저자의 미흡한 발표에 대해 학술대회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토론을 해주신 허원욱 선생님(건국대학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사의를 드린다.

<sup>2)</sup> 「대명률직해」에서 '-직해'는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활자본으로 만들면서 붙인 이름이다. 다만,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모두 「대명률직해」로 이름하고 있어,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지칭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대명률직해」로 부르기로 한다.

로서의 ‘及’에도 이러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及’의 ‘or’ 의미로의 쓰임은 현대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용법으로서 우리의 주의를 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及’의 쓰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sup>3)</sup>

「대명률직해」에서는 ‘또는’이라는 의미에 대해 이를 포괄하는 조사 ‘-去乃’는 쓰였으나, ‘또는’에 해당하는 이두어 부사는 쓰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及’을 ‘또는’에 해당하는 부사 어휘로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말 ‘및’에나 한자어 ‘及’에는 ‘또는’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점에 미루어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or’은 ‘또는/혹은’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명률직해」에서 ‘or’의 의미로 쓰인 ‘及’을 우리는 ‘또는/혹은’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명률직해」에서 ‘及’이 보이는 이러한 ‘or’의 의미를 현대국어에서의 ‘또는/혹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의미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두어 ‘及’은 ‘그리고, 그 밖에, 또’라는 의미와 ‘또는, 혹은’이라는 의미 외에 ‘미치다’와 ‘이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쓰임의 모두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한자어 ‘及’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이는 이두구문에서 한자어 ‘及’이 이와 같은 의미로서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두어 ‘及’과 한자어 ‘及’ 그리고 현대국어에서의 ‘및’을 상호 비교하고 쓰임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연구가 비록 「대명률직해」로 한정되었으나, 「대명률직해」가 30권에 이르는 자료이고 1395년에 간행되었으므로 중세 말엽의 국어에 대해 간접적으로 조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의 분석을 통해 부사 ‘및’에 대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용법상 차이를 다소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2. 「대명률직해」의 ‘及’과 현대국어의 ‘및’

### 2.1. 현대국어에서의 ‘및’의 쓰임

현대국어에서 부사 ‘및’은 ‘그 밖에’, ‘그리고’, ‘또’의 의미를 가진다.<sup>4)</sup> 따라서 그

<sup>3)</sup> 「대명률직해」와 이두에 대해서는 강영(1998), 고정희(1992), 김두황(1994), 박성중(1996), 박철주(2003, 2005, 2006ㄱ, 2006ㄴ, 2006ㄷ), 박희숙(1985), 배대운(2003), 장세경(2001), 한상인(1993), 홍순탁(1974) 참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열거된 사물의 모두를 통합한다.

- (1)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및 하얀 공 →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하얀 공

그러므로 “나는 파란 공, 노란 공 및 하얀 공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는 이들 공 중에서 두 개나 한 개의 공이 아니라 열거된 공들을 모두 합한 세 개의 공을 가진 것이 된다. 이것은 ‘및’의 의미를 설명하는 다른 말인 ‘그리고’나 ‘그 밖에’, ‘또’로 바꾸어 보아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현대국어에서 부사 ‘및’은 ‘and’의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열거함에 있어서 ‘및’이 쓰였다면 열거된 내용 중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는 없으며 그 모두가 선택되어야 한다. 이는 ‘동아 새국어사전(1989. 이기문 감수. 동아출판)’에서 ‘및’을 ‘-와 함께 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명률직해」에서의 부사 ‘및’은 쓰임에 있어서 현대국어의 ‘및’과 동일하지 않은 않았다. 「대명률직해」에서 이두어 ‘및’은 잠정적 결론이기는 하나 현대국어의 ‘및’에서는 볼 수 없는 의미인 ‘또는/혹은’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sup>5)</sup> 그래서 구문은 열거된 것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하나의 단위만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풀이 되었다. 즉, (1)과 같은 구문을 예로 든다면 「대명률직해」에서는 구문에 따라 모두 네 개의 공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공(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또는 한 개의

<sup>4</sup> 부사 ‘및’의 의미에 대하여 필자가 14개의 국어사전에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이들 사전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의미를 벗어나는 다른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 필자가 조사한 국어사전은 다음과 같다.

국어대사전(1982. 이희승 편. 민중서림), 다목적 종합 국어사전(1983. 김민수·홍용선 편. 어문각), 대국어사전(1984 수정판. 한국어사전편찬회 편. 현문사),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1987 개정. 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동아 새국어사전(1989. 이기문 감수. 동아출판), 뉴에이지 새국어사전(1989. 민병수 편. 교학사), 금성판 국어대사전(1993 6쇄판. 김민수 외 4인. 금성출판사), 크라운 국어사전(1995. 서정범 감수. 은광사), 우리말 큰사전(1997. 한글학회. 어문각), 훈 국어사전(1997. 남영신 엮음. 성안당), 국어대사전(1997. 이승녕 감수. 성문사), 표준 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국어대사전(1999. 한갑수 감수. 교육출판공사),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2000.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림)

<sup>5)</sup> 부사 ‘또’와 ‘또는’은 서로 다른 의미의 말로서, ‘또’는 ‘어떤 일이 거듭하여, 그 밖에 더(표준 국어대사전 1999)’, ‘그 뿐이 아니고 다시 더(우리말 큰사전 1997)’, ‘(어떠한 행동을) 거듭하여, (그뿐 아니라) 다시 더(금성판 국어 대사전 1993)’의 의미를 가지나,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표준 국어대사전 1999, 우리말 큰사전 1997, 금성판 국어 대사전 1993), 혹은(금성판 국어 대사전 1993)’의 의미를 가진다.

공(하얀 공)만 선택된다. 이처럼 풀이되는 ‘及’의 의미는 현대국어의 ‘및’에는 없는 것으로서 매우 특이한 쓰임이라 할 것이다.

## 2.2. 「대명률직해」에서의 ‘及’의 쓰임

### 2.2.1. ‘그리고/그 밖에/또’ 의미로의 쓰임

「대명률직해」의 이두어 부사 ‘及’은 현대국어에서 부사 ‘및’에 대응된다. ‘및’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고, 그 밖에, 또’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 보이는 ‘及’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sup>6)</sup> 다음의 예문은 ‘及’이 현대국어의 ‘및’과 동일한 의미로서 쓰인 구문들이다.<sup>7)</sup>

(2) 가. 凡 京官 及 在外 五品 以上 官亦 犯罪爲去等(1:9a)

(무릇 京官 ㄱ 在外 5품 이상 官여 범죄하거든)

[무릇 서울의 관직 그 밖에 지방 관직으로서 5품 이상인 관료가 죄를 범하였거든]

나. 奉王旨 推問爲在 人乙良 所犯罪果 及 議擬事狀乙 開坐(1:11b)

(奉王旨 推問하건 사람오란 所犯罪과 ㄱ 議擬事狀을 開坐)

[임금의 뜻을 받들어 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할 사람은 범죄의 상황과 또 그 범죄자가 팔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낱날이 적어서]

다. 軍丁段 軍官 及 軍人矣 數外 餘丁是齊(1:13a)

(軍丁段 軍관 및 軍인인 수 밖의 餘丁이저)

[군정은 군관 그리고 군인의 수 밖의 나머지 장정이다]

라. 官中 錢糧 刑名事 及 文卷 重記 等乙 差錯無亦 交相授受爲乎矣(2:5b)

(관사 내의 錢糧·刑名事 ㄱ 文卷·重記 등을 差錯없스론건이여 交相授受호오디)

[관사 내의 금전과 양곡 및 형벌과 감옥에 관한 일 그리고 문권과 사무 인계용 문서 등을 착오 일으킴이 없이 서로 만나서 주고받되]

<sup>6)</sup> ‘及’은 ‘및-’이 부사로 쓰인 訓借字로서(남풍현 1974: 12), 고정의(1992: 131)에서는 ‘及’을 ‘및’으로 읽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의 뜻을 ‘또’로 풀이하고 있다.

<sup>7)</sup> 이두구문의 해석에 있어서 ( ) 안의 풀이는 이두어휘를 현대국어의 음가로 바꾼 것이고, [ ] 안의 풀이는 예문을 현대국어로 의역한 것이다. 이두의 음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두 독음서(「吏文」, 「吏文大師」, 「吏讀使覽」, 「儒符必知」, 「羅麗吏讀」, 「이두자료 읽기사전(장세경. 2001. 한양대학교출판부)」, 「역대 이두사전(배대운. 2003. 형설출판사)」)을 참고하였다.

마. 郎廳 及 書吏令史 各 杖一百遣(3:11a)

(郎廳 및 書吏·令史 각 杖 일백하고)

[낭청관 그리고 서리와 영사는 각각 장 100대를 치고]

바. 凡 倉庫 及 各處 積上物色等乙 看守人等弋只(7:10b)

(무릇 창고 그리고 각 처에 積上된 物色들을 看守人들익기)

[무릇 창고 그리고 각 처에 쌓아 놓은 물건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사람들이]

위의 구문에서 (2가)는 관료의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거론되는 관료는 언급하는 관료의 죄에 모두 관련되는 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 관료 중 어느 한 사람만 관료의 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2나)는 왕의 결재를 받아야만 처벌할 수 있는 자[應議者]에 대해 심문할 때의 일처리를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심문관은 언급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이행하여야 한다. (2다)는 용어의 정의이므로 당연히 언급된 내용 모두가 해당된다. (2라)의 경우는 업무인계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거되는 일들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된다. (2마)는 장 100대의 형벌을 내려야 할 대상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언급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장 100대를 맞아야 한다. 그리고 (2바)에서는 ‘창고와 각 처에 쌓아 놓은 물건들을 보살피고 지킨다.’라는 간수인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구문에서 말하는 내용 모두가 곧 간수인의 업무이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있는 물품만을 지키는 것이 간수인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2)의 구문에서 ‘及’은 현대국어로의 풀이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가져 「대명률직해」에서도 ‘及’은 현대국어의 ‘및’과 동일한 의미로서 쓰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위의 구문 중에서 우리는 이두구문과 이에 대응되는 명률구문 모두에서 공통되게 ‘及’을 사용하고 있는 구문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바로 (2가, 나, 라, 바)로서 이들 구문에 대응되는 명률구문에서도 ‘及’이 (2)에서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sup>8)</sup> 위 (2)에 대한 명률구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sup>8)</sup> 자전(字典) 상에서의 ‘及’은 국어사전에서 ‘및’에 대한 뜻풀이로 사용한 어휘와는 다른 어휘로써 뜻이 풀이되고 있다. 즉, 자전에서는 이를 ‘와(컴퓨터 활용옥편. 1992. 민성사, 현대 활용옥편. 1994. 동아출판, 韓漢대사전. 1997. 교육출판공사)’하고 ‘더불어(韓漢 대사전. 1965. 민중서관, 韓漢 대사전. 1997. 교육출판공사)’의 의미로 설명한다. 하지만 ‘와’이건 ‘더불어’이건 간에 이는 ‘그리고, 그 밖에, 또’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유사한 뜻이므로 자전과 국어사전이 ‘及/및’에 대해 서로 다르게 풀이한 것은 아니다.

- (3) 가. 凡京官及在外五品以上官有犯  
 나. 若奉旨推問者開具所犯及應議之狀  
 다. 軍丁謂軍官軍人餘丁  
 라. 交割戶口錢糧形名等項及應有卷宗籍冊完備  
 마. 首領官吏各杖一百  
 바. 凡倉庫及積聚財物主守之人

(3)을 보면 오직 (3다)와 (3마)의 명물구문만이 ‘及’을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문을 풀이한 (2다, 마) 구문의 ‘及’만이 진정한 우리말 표기인 이두어가 된다. 그리고 이외의 (2가, 나, 라, 바)에서의 ‘及’은 한자어가 된다.<sup>9)</sup> 이는 특히 (2가)와 (3가)의 경우 (3가)는 ‘有犯’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체가 (2가)와 동일하며, (2바)와 (3바)에서는 (3바)의 ‘積聚財物主守之人’을 제외하면 (3바)의 나머지 앞부분이 역시 (2바)와 서로 동일하다는 것에서 여실히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及’이 쓰인 이두구문이라 할지라도 모든 ‘及’이 이두어로서 쓰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sup>9)</sup> (2가, 나, 라, 바)의 경우 비록 명물구문과 동일하게 ‘及’이 쓰였더라도 이두구문에서의 ‘及’은 한자어 ‘及’을 이두어 ‘及’으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한자어 ‘及’에 대한 이두어도 역시 ‘及’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명물구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8나, 마)에서 명물구문과 이두구문 모두에 ‘不及’이 쓰이고 있어서 이다. (8나, 마)에서 ‘及’은 ‘미치지’라는 뜻이므로, ‘及’이 이두어라면 명물구문의 ‘不及’은 이두구문에서 ‘及 不冬’으로 되어야 한다. 이는 ‘不及’이 ‘미치지 않다’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쓰이지 않았으므로 이두구문에서 보이는 ‘不及’에서의 ‘及’은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8나, 마)에서 명물구문의 ‘不及’을 이두구문에서도 그대로 ‘不及’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명물구문과 동일한 구문을 보이는 이두구문에서의 ‘及’은 이두어가 아닌 한자어인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서의 ‘及’이 이두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凡京官及在外五品以上’을 ‘무릇 경관 1품 5품 이상 관’으로 읽거나 ‘무릇 경관 1품 5품 이상’으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8나, 마)에서의 ‘不及’은 한자어가 분명하므로 이에 비추어 여기서는 명물구문과 동일한 구문을 보이는 이두구문에서의 ‘及’은 한자어인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sup>10)</sup> 이두구문에서 ‘及’이 한자어인 경우 이를 어떻게 읽었는가가 문제가 된다. (2가)의 경우 이를 ‘무릇 경관 1품 5품 이상 관’으로 읽었는지, 아니면 명물구문인 ‘凡京官及在外五品以上官’이므로 이 구문을 ‘범경관1품5품이상관’으로 읽듯이 (2가)의 ‘凡京官及在外五品以上官’도 ‘범경관1품5품이상관’으로 읽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及’이 한자어일 경우 이 글자가 이두어가 아닌 한자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두 해석에 있어서 한자어 음인 ‘급’으로 표기하였다.

2.2.2. ‘또는/혹은’ 의미로의 쓰임

부사 ‘및’은 ‘and’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구문에서 나열되는 것들은 취사선택할 수 없고 그 모두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명률직해」에서는 부사 ‘및’에 해당하는 ‘及’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and’의 의미가 아닌 ‘or’의 의미를 지닌 ‘또는/혹은’으로 풀이가 되어, 나열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구문이 있다. 다음의 구문들이 바로 그 예로서 이들 구문에서의 ‘及’은 모두 ‘또는/혹은’의 의미로 풀어야만 구문이 내용상 옳게 된다. 아래 (4)의 예문은 이에 대응하는 명률구문에 ‘及’이 쓰이지 않은 구문들로서 여기의 ‘及’은 모두 이두어 이다.<sup>11)</sup>

(4) 가. 祖父母 及 父母喪乙 聞遣 隱匿不發爲齊(1:5b)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을 듣고 隱匿不發하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초상을 치르지 않거나]

나. 生存爲在 祖父母 及 父母乙 身故爲乎 樣以 妄稱爲行馱乎事(1:5b)

(생존하면 조부모 및 부모를身故하지 양으로 妄稱하지 않는 일)

[살아계신 조부모 또는 부모를 돌아가신 양 망령되어 일컫는 일]

다. 枉法 及 不枉法以 受贈爲乎 贓物乙良 沒官齊(1:26b)

(枉法 및 不枉法으로 受贈받은 장물이란 관사에서 몰수제)

[법리를 굽혔거나 혹은 굽치지 않았거나에 상관없이 받은 장물은 관사에서 몰수한다]

라. 凡 豪勢之人等亦 良家妻 及 女乙 強奪 妻妾爲(6:7a)

(무릇 강대한 세력의 사람이여 양가의 처 및 딸을 강탈하여 처나 첩으로 하여)

[무릇 강대한 세력의 사람들이 지체 있는 집안의 아내 또는 딸을 강탈하여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삼아서]

마. 凡 官吏等亦 妓女 及 樂人乙 娶爲 妻妾者 杖六十遣(6:7b)

(무릇 관리이여 기녀 및 악기 연주인을 취하여 처나 첩으로 한 자는杖 육십고)

[무릇 관리들이 기생 또는 악기를 다루는 여인을 취하여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는 장 60대로써 처벌하고]

<sup>11)</sup> 본문 (4)의 구문에 대한 명률구문들을 모두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聞祖父母父母喪匿不舉哀	나. 許稱祖父母父母死
다. 謂如枉法不枉法贓微入官	라. 凡豪勢之人強奪良家妻女奸占爲妻妾
마. 凡官吏娶樂人爲妻妾者杖六十	

(4)의 구문들에서 '及'은 '및'에 대응되는 이두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어로의 해석에 있어서 내용상 '그리고/그 밖에/또'가 아닌 '또는/혹은'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만일, 이들 구문에서 '及'의 뜻을 '그리고/그 밖에/또'인 것으로 하여 풀이를 하게 되면, (4가)의 경우는 조부모의 초상에 부모의 초상까지 겹친 줄초상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4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한꺼번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4다)는 하나의 사건에 범리를 굽힌 동시에 굽히지 않았다는 말이 되어 비문이 된다. (4라)의 경우는 '강대한 세력의 사람이 양갓집의 부인에 더하여 딸마저도 강탈하여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삼았다'가 된다. (4마)는 관리가 기생과 여자 악사 둘을 같이 취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았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해석이 이렇게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굳이 '及'을 현대국어에 맞춰 '그리고/그 밖에/또'라고 하여 해석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4가)의 경우 줄초상이 아닌 경우에는 초상을 치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4나)에서는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빼 놓고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4다)는 내용상 실행 불가능이므로 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 (4라)의 경우는 양갓집에서 부인이나 딸 중 어느 한 명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4마)에서는 기생이나 여자 악사 중 한 여자만 취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구문이 일반 문서의 구문이 아닌 법조문이기 때문이다. 법률문의 특징은 어떠한 행위가 법조문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를 때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4라)의 경우 실제의 의미는 "부인이나 딸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강제로 취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한다."이다. 그러므로 가없는 양갓집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조문은 '및'이 '그리고/그 밖에/또'가 아닌 '또는/혹은'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되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보아 「대명률직해」는 「경국대전(1484년, 성종 15)」이 나오기까지 거의 100년간 조선을 다스렸던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의 형률에 있어서도 여전히 인용되었다. 게다가 「대명률직해」의 법조문이 모호하다는 상소문이 잇따랐다는 기록 또한 없다. 따라서 이 법서의 법조문은 아무 탈 없이 집행되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및'이 그 당시에는 구문에 따라 '또는/혹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미가 그 시대에

도 오늘날과 동일하게 ‘또는/혹은’이었던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이는 ‘또는/혹은’이 현대국어의 ‘및’에는 없는 의미이며, ‘또는’에 해당하는 이두가 「대명률직해」에서 전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또는/혹은’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는 다소 다르게 쓰였을 개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及’이 ‘또는/혹은’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자료에 따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잠정적인 결론으로 유보해 둔다. 하지만 (4)에서의 이러한 ‘及’의 의미는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미로서 ‘및’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변천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sup>12)</sup>

우리는 이두어 ‘及’은 내용상 ‘또는/혹은’으로 풀이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대국어의 부사 ‘및’에는 ‘또는/혹은’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국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한문하고도 관련이 지어진다. 다음의 구문은 ‘及’이 ‘또는/혹은’으로 풀이되는 구문들로서 이에 대응되는 명물구문에서도 ‘及’이 쓰이고 있다.

(5) 가. 其矣 夫 及 大功同姓 四寸 已上 族長 及 小功同姓 五六寸 族長 等乙 打傷爲拵 訴告爲行臥乎 事(1:5b)

(그의 夫 卽 大功同姓 4촌 이상 族長 및 小功同姓 오륙촌 族長 등을 打傷하며 訴告하닐누은 일)

<sup>12)</sup> 본문 (4)의 구문에서 ‘及’이 쓰인 부분을 보면 이들은 모두 ‘NP 及 NP VP’로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 동일한 ‘VP’가 쓰인 ‘NP VP 及 NP VP’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及’은 ‘or’의 의미가 아닌 본래의 의미인 ‘and’인 것으로 하여도 양자택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4나)의 경우 이를 ‘祖父母 身故爲乎 樣以 及 父母乙 身故爲乎 樣以’인 것으로 하고, 이때 ‘及’을 ‘그리고’로 하여 ‘조부모를 돌아가신 양으로 그리고 부모를 돌아가신 양으로’로 해석을 하여도 의미상으로는 양자의 어느 한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2.2.2’의 경우는 동일한 두 개의 ‘VP’에서 선행 ‘VP’가 생략되는 이두구문의 통사 구조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 구문이 ‘NP 及 NP’처럼 되어 ‘及’이 ‘또는/혹은’으로 해석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及’이 ‘or’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and’의 의미를 가졌으나 통사 구조상 ‘or’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처럼 풀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가, 다, 라, 마)의 구문에서는 ‘及’의 선행 명사구에 동사를 그대로 살려둔다 하여도 ‘及’은 내용상 ‘또는/혹은’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즉, (4가)의 경우 ‘及’의 선행 명사구에 대한 서술어는 문맥상 ‘聞去乃’가 되어야 하고 (4다)는 ‘爲去乃’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라)는 ‘強奪爲去乃’, (4마)는 ‘娶爲去乃’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어에서 ‘~거나’는 ‘~거나 또는 ~(거나)’의 문형으로 쓰이지 ‘~거나 그리고 ~(거나)’의 문형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구문은 ‘及’의 선행 명사구에 서술어가 그대로 있다하더라도 ‘及’은 여전히 ‘또는/혹은’의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4나)의 경우도 ‘及’이 ‘그리고’의 의미가 아니라 (4가, 다, 라, 마)와 같이 ‘또는/혹은’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이두구문의 통사 구조상에 의한 문제로서 보다는 ‘及’이 지닌 의미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신의 남편 **또는** 대공복을 입는 자로서 같은 성을 가진 4촌 이상의 존장이나, 같은 성으로서 소공복을 입는 5·6촌의 존장 등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며, 이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다]

나. 凡 入八議爲在 人矣 祖父母 父母 妻 **及** 子孫亦 犯罪爲去等(1:11b)

(무릇 入八議<sup>호</sup>건 사람의 조부모·부모·처 **급** 자손여 범죄<sup>호</sup>거든)

[무릇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할아버지·할머니나 아버지·어머니나 아내 **또는** 자손이 죄를 짓거든]

다. 其 事爲在 乙良 流罪 **及** 徒罪乙 犯爲良置 各 杖一百遣(1:20a)

(그 일<sup>호</sup>건으란 流罪 **급** 徒罪를 범<sup>호</sup>야두 각 杖 일백)

[그 일을 해내거든 (그 자가) 유배죄 **혹은** 도역죄를 저지르더라도 각기 장 100대만 집행하고]

라. 死罪 **及** 笞杖乙 已決爲笞(1:35b)

(死罪 **급** 笞杖을 已決<sup>호</sup>며)

[사형 **또는** 태형이나 장형을 이미 집행하였거나]

마. 凡 父母喪 **及** 夫喪 等乙 蒙白爲 嫁娶爲在 乙良 杖一百 爲笞(6:4b)

(무릇 부모의 초상 **급** 남편의 초상 등을 蒙白<sup>호</sup>여도 嫁娶<sup>호</sup>건으란 杖 일백<sup>호</sup>며)

[무릇 부모의 초상 **또는** 남편의 초상 등을 당하여 상복을 입은 와중에도 장가를 거나 시집간 경우에는 장 100대를 치며]

위의 구문에서 (5가)는 열거된 사람 중 누구에게라도 ‘구타·고소·고발’이라는 특정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5나)에서는 범죄라는 특정된 행위를 열거된 사람 중 누구라도 하였을 경우를 말하고 있다. (5다)는 병립 불가능한 일의 나열이다. 즉, 한 사람이 유배형의 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도역형의 죄도 저지를 수는 없다. (5라) 역시 병립 불가능한 일의 나열이다. 한 사람이 사형도 받고 태형도 받고 장형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5마)는 열거된 상황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라도 ‘혼인’이라는 특정된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구문에서는 구문의 내용이 ‘행위 특정’이나 ‘병립 불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及**’은 ‘또는/혹은’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5)에 대응되는 명률구문에서도 다음에서 보듯이 ‘**及**’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6) 가. 毆告夫**及**大功已上尊長小功尊屬

나. 凡應八議者之祖父母父母妻**及**子孫犯罪

다. 其事犯流**及**徒者各決杖一百

라. 謂死罪及笞杖已決訖

마. 凡居父母及夫喪而身自嫁娶者杖一百

우리는 (5)와 (6)의 구문에서 ‘가’는 ‘夫及大功’ 부분이 동일하고, ‘나’는 ‘祖父母父母妻及子孫’ 부분이, ‘라’는 ‘死罪及笞杖’ 부분이 서로 동일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5다)의 ‘流罪及徒罪’ 부분과 (6다)의 ‘流及徒’가 어휘만 다를 뿐 서로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5마)의 ‘父母喪及夫喪’과 (6마)의 ‘父母及夫喪’이 어휘만 조금 달리 했을 뿐 둘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5)에서의 ‘及’은 이두어로 보기 어렵고 한자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음 한문 구문에서 보듯이 정작 한자어 ‘及’에는 국어의 ‘및’과 마찬가지로 ‘또는/혹은’이라는 의미가 없다.<sup>13)</sup>

(7) 가. 李延年 中山人也 父母及身兄弟及女 皆故倡也(史記 佞行列傳)

(이연년은 중산 사람이다. 부모와 자신과 형제와 딸이 모두 옛 광대였다)

나. 六月食鬱及薁, 七月亨葵及藿(詩經)

(유월에는 돌베와 머루를 따 먹고, 칠월에는 아욱과 콩을 삶아 먹는다)

다. 吏兵斬其使及從士三十餘級(後漢書, 班超傳)

(관리와 병사들이 그 사절과 따라온 병사 30여인을 참수하였다)

최길원(1997)은 ‘及’에 대하여 명사를 접속시킬 때 쓰는 것으로서 조선어의 ‘및’과 ‘과’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김용걸(2003: 233)은 ‘及’이 선행구(절)와 후행구(절)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사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한자어 ‘及’은 ‘또는/혹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국 고대에서는 ‘及’이 ‘또는/혹은’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허백(1997: 323)은 ‘公如晉, 拜師及就糶田也(左傳, 襄公二十一年): 魯襄公이 진나라에 간 것은 진나라가 출병시켜 도와줌으로서 주나라의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사례를 하기 위함이다’의 구문을 예로 들면서 중국 고대의 어법에서 ‘及’은 병렬관계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연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한문으로서의 ‘及’은 ‘또는/혹은’이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sup>13)</sup> 필자가 ‘及’에 대하여 조사한 자전은 「韓漢 대사전(1965. 민중서관)」, 「컴퓨터 활용옥편(1992. 민성사)」, 「현대 활용옥편(1994. 동아출판)」, 「최신 漢字옥편(8쇄 1994. 민중서림)」, 「韓漢대사전(1997. 교육출판공사)」, 「韓漢 대사전(7쇄 2003. 민중서림)」, 「교학 韓漢사전(4쇄 2004. 교학사)」 등이다.

한문에서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는 ‘及’ 아니라 ‘若, 如, 或, 抑, 意, 且, 寧, 將, 與其…孰若, 與其…不如, 孰與’이다(이종한 옮김 2001: 253).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대어법에서도 선택관계를 의미할 때는 ‘若, 如, 或, 抑, 意, 且, 寧, 將, 與其, 孰與, 其…其, 與…寧, 與其…不如, 與其…孰與, 若…若’으로 나타낸다(허백 1997: 324). 따라서 우리는 ‘及’이 선택의 의미에서도 쓰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문이 아닌 중국어로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及’에는 ‘또는/혹은’의 의미가 없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와’를 ‘以及’로 쓰고, 고대 중국어에서는 ‘及’으로 썼다. 이와 같이 ‘及’은 한문으로서나 중국어로서나 예나 지금이나 ‘또는/혹은’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문들에서 ‘及’이 ‘또는/혹은’으로 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대명률직해」에서 ‘또는/혹은’으로 풀이되는 경우 내용상 그렇게 풀이하여야만 옳게 된다. 예를 들어 ‘死罪 及 笞杖乙 已決爲拵(1:35b)’의 경우 ‘及’을 ‘와’로 해석하면 그 죄수는 사형과 동시에 태형과 장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 해석대로 한다면 시체에 태형과 장형을 가하는가 태형과 장형을 가한 후에 사형시킨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없다. 마찬가지로 ‘其 事爲在乙良 流罪 及 徒罪乙 犯爲良置 各 杖一百遺(1:20a)’의 경우 ‘及’을 ‘와’로 보면 한 사람이 하나의 범죄로 인하여 도역형의 죄와 유배형의 죄를 동시에 짓는 것이 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한 범죄 행위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及’을 ‘또는/혹은’의 의미로 본 것은 옳게 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물론 한자어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의 ‘또는/혹은’이라는 풀이가 현대국어로의 해석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곧 실제로는 ‘또는/혹은’이 아닌 이와 유사한 다른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다. 이두어 및 한자어 ‘及’이 가지는 ‘또는/혹은’이라는 의미가 14세기 말엽에도 오늘날과 동일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는 「대명률직해」에서 ‘또는’이라는 말에 대응되는 이두어가 쓰이지 않았음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은 ‘또는’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을 개연성을 우리에게 보인다.<sup>14)</sup> 그렇다고 ‘또는/혹은’에 상응하는 어떤 의미조차도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미치다’의 의미를 지닌 ‘及’을 제외 한 모든 ‘及’에

<sup>14)</sup> 말은 곧 사고이므로 말이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또는’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또는’이라는 의미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있어서 전부 ‘and’의 의미로서 풀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위에서 예로 든 구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구문에 있어서 혼동과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14세기 말엽의 국어에는 ‘또는/혹은’에 상응하는 어떠한 다른 의미가 이두어 ‘及’과 한자어 ‘及’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점차 약해져서 오늘날에는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명률직해」의 분석을 통한 잠정적 결론이므로 다른 다양한 자료를 통한 광범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及’이 「대명률직해」에서 ‘그리고/그 밖에/또’나 ‘미치다/이르다’의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의 의미로 ‘또는/혹은’과 상통되는 의미가 쓰였다는 것이다.

### 2.2.3. ‘미치다/이르다’ 의미로의 쓰임

이두어 ‘及’은 한자어 ‘及’의 훈차자이다. 그런데 한자어 ‘及’에는 ‘밋’이라는 의미 외에 ‘미치다/이르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이두어 ‘及’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다음의 구문에서 보듯이 「대명률직해」에서는 ‘及’을 ‘미치다/이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sup>15)</sup>

(8) 가. 各各 已定限日內及 赴任爲乎矣(2:5b)

(각각 이미 정해진 기한 날짜 내 **밋쳐** 부임호오다)

[각각 이미 정해진 기한 날짜 내에 **이르도록** 부임하되]

나. 五名 不**及** 爲在乙良 免罪爲乎事(4:8a)

(다섯 명 아니 **급** 호견오란 면죄호은 일)

[다섯 명에 **미치지** 않으면 죄를 사면해줄 일이다]

다. 供給爲乎 軍器糧食草料 等乙 日**及** 准備支應 不得 爲在乙良(14:4a)

(공급호은 軍器·糧食·草料 등을 때에 **밋쳐** 准備支應 모질 호견오란)

[공급해야 할 군사무기 양식 말먹이 등을 때에 **이르면** 옹당히 준비하고 지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라. 領兵軍官亦 定日**及** 行兵助戰 不冬 爲跡(14:4a)

<sup>15)</sup> 현대국어에서는 ‘밋’과 ‘미치다’는 별개의 어휘이다. 그러나 이두에서는 ‘及’으로 둘 다 표기하고 있어 구분이 없는 듯 하나, 「대명률직해」에서는 실제의 쓰임에 있어서 구문의 유형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 ‘밋’과 ‘미치다’를 ‘밋’과 ‘밋쳐’ 정도로 음가를 다르게 하여 구분하였음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한다.

(병사를 領率하는 군관이 定日에 및쳐 行兵助戰 안다 하며)

[군사를 거느리며 통솔하는 군관이 정해진 날짜에 이르러도 병력을 보내어 전투를 돕지 아니 하며]

마. 同數良中 不及 爲在乙良 不坐罪齊(14:10b)

(같은 수아히 아니 균 故件으란 不坐罪齊)

[같은 수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위의 구문은 모두 어떤 일정한 때나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及’은 전부 ‘미치다/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8)의 구문을 통해 ‘及’이 「대명률직해」에서 ‘그리고/그 밖에/또’의 의미와 ‘또는/혹은’의 의미 외에 ‘미치다/이르다’라는 의미로도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런데 (8나, 마)의 경우는 이의 원문인 명률구문에서도 ‘及’이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 (9)의 구문은 (8)과 대응되는 명률구문을 보인 것이다.

(9) 가. 各依已定程限赴任

나. 不及五名者免罪

다. 應合供給軍器行糧草料違期不完者

라. 領兵官已承調遣不依期進兵策應

마. 不及數者不坐

(9나, 마)에서 한자어 ‘及’의 의미는 이두어 ‘及’과 동일하게 ‘미치다/이르다’이다. 그러므로 의미해석에 있어서는 한자어 ‘及’은 이두어로 쓰인 ‘及’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다만, 우리는 해석을 떠나서 한자어 ‘及’이 쓰이지 않은 (8가, 다, 라)에서의

<sup>16)</sup> ‘及’이 ‘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는 「대명률직해」 외에 다음과 같이 중세국어의 언해 문에서도 찾아진다.

가. 아사 꾸미 내 모매 밋도다[取用及吾身](初杜解9:23)

나. 도라오매 미천 머리 다 세도다[及歸盡華髮](重杜解1:5)

다. 艱虞를 마고매 예서 어니 미즈리오[防虞此何及](重杜解1:22)

라. 불근 너르메 촌 트레 밋게 흐라[朱夏及寒泉](重杜解2:14)

마. 미즈면 현신이 되오[及則賢](麟小8:3)

바. 또 대중의게 미초문[又及大眾者](法華1:56)

사. 군신이 미초리 업거늘[羣臣莫及](五倫2:35)

아. 뽕의 미쳐 보닌[愚及見者](楞解1:16)

자. 보며 드로미 머리 밋거니와[見聞遠及](楞解9:63)

차. 술위와 물에 밋디 아니 흐나니[不及車馬](宣小2:11)

‘及’은 이두어이나, 명률구문에 한자어 ‘及’이 쓰인 (8나, 마)의 ‘及’은 이두어가 아닌 한자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명률직해」의 이두구문에 쓰인 ‘及’이 모두 이두어는 아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다.

### 3. ‘及’의 쓰임별 구분

우리는 앞에서 부사 ‘及’이 내용에 따라 각각 세 가지 유형의 의미로 풀이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及’의 여러 가지 의미가 주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사뭇 크다. 이유는 「대명률직해」가 법서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及’을 ‘그리고/그 밖에/또’의 의미로 해석하거나 ‘또는/혹은’의 의미, 아니면 ‘미치다/이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람마다 ‘及’에 대한 의미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저마다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게 되며, 법관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질서가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대명률직해」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상소가 잇따랐다는 기록은 보지 못하였다.<sup>17)</sup> 이는 곧 우리에게 「대명률직해」가 법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아울러 ‘及’의 해석에 의한 문제도 따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나 ‘及’에 대한 의미 해석이 각각의 의미마다 서로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럼 14세기 말에는 어떻게 ‘及’의 의미를 착오 없이 알 수 있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2.2.1’, ‘2.2.2’, ‘2.2.3’에서 다루었던 구문들을 재차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구문에서 ‘及’이 한자어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2.2.1’의 경우는 (2다)와 (2마)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2.2.2’에서는 (4)의 전 구문이, 그리고 ‘2.2.3’에서는 (8가, 다, 라)가 대상이 된다. 먼저 ‘2.2.1’과 ‘2.2.2’에서 그 구문들을 다시금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해석 부분은 생략한다).

(2) 2. 다. 軍丁段 軍官 及 軍人矣 數外 餘丁是齊(1:13a)

마. 郎廳 及 書吏令史 各 杖一百遺(3:11a)

<sup>17)</sup> 「대명률직해」가 우리의 실정에 잘 맞지 않아서 「경국대전」(1484년, 성종 15)과 같이 부분별로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대명률직해」 자체가 법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서 개정한 것은 아니다.

(4)' 가. 祖父母 及 父母喪乙 聞遣 隱匿不發爲齊(1:5b)

나. 生存爲在 祖父母 及 父母乙 身故爲乎 樣以 妄稱爲行臥乎事(1:5b)

다. 枉法 及 不枉法以 受贈爲乎 贓物乙良 沒官齊(1:26b)

라. 凡 豪勢之人等亦 良家妻 及 女乙 強奪 妻妾爲(6:7a)

마. 凡 官吏等亦 妓女 及 樂人乙 娶爲 妻妾者 杖六十遣(6:7b)

우리는 (2다)'의 내용이 '軍丁'이란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마)'에서는 '郎廳'과 '書吏·令史'에게 장 100대를 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지시'는 (4)'에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4가, 나, 라, 마)'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언급하고 있으며, (4다)'에서는 내용상 서로 병립이 불가능한 것을 나열하고 있다.<sup>18)</sup> 그런데 (4)'의 이 같은 '행위 특정'이나 '병립 불가능'도 역시 반대로 (2다, 마)'에서는 전연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2)'와 (4)'의 구문은 내용상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규정'이나 '지시'에 있어서 열거되는 내용들은 모두가 해당사항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규정'이나 '지시'에서 언급되는 것들은 모두가 대상이므로 어느 하나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구문의 내용이 '규정'이나 '지시'인 (2다, 마)'에서의 '及'은 당연히 'and'의 의미인 '그리고/그 밖에/또'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한편, 특정된 행위를 언급하고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sup>18)</sup> (4다)'의 '枉法'과 '不枉法'은 '참'과 '방패'의 관계처럼 서로 상대되는 것이므로 병립될 수 없다.

<sup>19)</sup> (2)'와 같이 이두어 '及'이 '그리고/그 밖에/또'의 의미로 풀이되어야 하는 구문을 더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들 구문에서도 역시 내용이 '지시'로 한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是齊'로 규정되는 구문은 「대명률직해」에서는 (2다) 하나 밖에는 없다.

가. 徒流 及 鋤刺 皆免(1:13a)

(徒·流 및 鋤刺)란 모두 면제)

[도형과 유형 그리고 문신의 형벌은 모두 면제]

나. 並只 還俗爲 軍民役 及 工匠 鑿于 等 本役良中 定送爲乎事(1:16a)

(다무기 환속하여 軍·民役 및 工匠·鑿于 등 본役이하 定送받은 일)

[모두 환속시켜 군역이나 민역 그 밖에 장인의 역이나 소금 굽는 역 등 본래의 직역에 보내도록 할 일이다]

다. 罪人矣 蒙赦減 等 例 及 贖罪 例以 依准施行(1:31b)

(죄인의 蒙赦減 等 예 및 속죄 예로 依准施行)

[죄인이 사면이나 감경 등을 받았을 경우의 예 그리고 속죄의 예에 건주어 형벌을 시행한다]

라. 枉法 及 盜罪良中 依憑准論爲(1:43a)

금지하는 경우에는, 구문에 열거된 사람이나 상황 중 어느 누구에게(혹은 어느 누가)라도 또는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라도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곧 금지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열거된 사람 모두에게(혹은 모두가) 또는 나열된 상황 모두에서 그 행위를 하여야만 특정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의 행위를 언급하고 그 것을 금지하고 있는 (4가, 나, 라, 마)에서는 ‘及’이 필히 ‘or’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4다)에서처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병립할 수 없는 관계에서도 ‘及’은 응당 ‘or’의 의미로 풀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의 분석을 통해 구문이 ‘규정’이나 ‘지시’의 내용이면 ‘及’은 ‘그리고/그 밖에/또’의 의미로서 사용되었고, 구문이 ‘행위 특정’이나 ‘병립 불가성’의 내용을 지니면 ‘及’은 잠정적이거나 ‘또는/혹은’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대명률직해」에서는 ‘及’이 구문에 따라 ‘미치다/이르다’의 의미로도 쓰였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 쓰인 ‘及’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8)을 다시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다만 명률구문에 ‘及’이 없는 구문으로서 ‘及’이 분명히 이두어로 쓰인 ‘가, 다, 라’만을 대상으로 한다(해석 부분은 생략한다).

(8) 가. 各各 已定限日內及 赴任爲乎矣(2:5b)

다. 供給爲乎 軍器糧食草料 等乙 日及 準備支應 不得 爲在乙良(14:4a)

라. 領兵軍官亦 定日及 行兵助戰 不冬 爲旆(14:4a)

우리는 (8)에서 (2)나 (4)와는 전연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에서는 한결같이 어떤 특정된 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때에 이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구문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日’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2)와 (4)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으로서 (8)의 구문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여기서 우리는 ‘及’이 ‘미치다/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구문에 때를 나타내는 어휘가 쓰이며, 내용은 특정된 때에 이르는 것을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sup>20)</sup>

(枉法 및 盜罪아하 依憑准論하고)

[법리를 굽힌 죄 그 밖에 도둑의 죄에 의거하여 논의하고]

<sup>20)</sup> ‘미치다/이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는 말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는 반드시 특정한 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의 ‘특정한 때’는 ‘특정한 상황’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及’이 ‘미치다/이르다’로 풀이되는 경우는 구문에 특정한 때 혹은 특정한 상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여 ‘ㅈ’의 여러 의미는 결코 임의적으로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며, 내용상 명확한 구분에 의하여 분별적으로 해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지는 이유는 「대명률직해」가 법서이기 때문이다. 만일 본 연구의 자료가 법서가 아니라면 이러한 결론의 도출은 어렵다. 법서는 토씨 하나라도 명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적용되는 자료이므로 임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ㅈ’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제 각각 해석하게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명률직해」에서 ‘ㅈ’을 이렇게 여러 의미로 썼다는 것은 그 당시 ‘ㅈ’에 대해 임의적으로 의미를 새기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ㅈ’의 이러한 쓰임들이 그 시대에 공통된 인식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ㅈ’에 대한 본고의 쓰임별 구분은 그 당시 ‘ㅈ’에 대한 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마무리

「대명률직해」에는 현대국어의 부사 ‘땃’에 해당하는 이두어 ‘ㅈ’이 쓰였다. 「대명률직해」에서 ‘ㅈ’은 ‘그리고/그 밖에/또’라는 의미와 ‘또는/혹은’의 의미 그리고 ‘미치다/이르다’라는 의미로 각각 쓰였다. 이두어 ‘ㅈ’이 지닌 ‘그리고/그 밖에/또’라는 의미는 현대국어의 ‘땃’과 동일한 의미로서 「대명률직해」에서와 현대국어 간에 용법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또는/혹은’의 의미는 현대국어의 ‘땃’에는 없는 의미였다. 마찬가지로 한자어 ‘ㅈ’에도 없는 의미였다. 하지만 구문상에서는 ‘ㅈ’을 ‘or’의 의미로 풀이하여 야만 내용상 옳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또는/혹은’의 의미에 대하여 잠정적인 의미로 처리하였다. ‘미치다/이르다’라는 의미는 부사 ‘땃’에는 없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자어 ‘ㅈ’에는 있는 의미로서 이두어 ‘ㅈ’은 한자어가 지닌 ‘미치다/이르다’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이는 이두어 ‘ㅈ’이 한자어 ‘ㅈ’의 훈차자인 때문으로서 이두어 ‘ㅈ’이 가지는 또 다른 쓰임이라 할 것이다.

「대명률직해」에서 이두어 ‘ㅈ’이 지니는 세 가지 유형의 의미들은 그 쓰임에 있어서 내용에 따라 각각 명확하게 분별되었다. ‘그리고/그 밖에/또’라는 의미는 구문의 내용이 ‘규정’이나 ‘지시’로 이루어졌을 때 쓰였다. 하지만 ‘또는/혹은’이라는 의미는 구문이 ‘행위 특정’이나 ‘병립 불가성’의 내용일 경우에 한해 쓰였다. 그리고 ‘미치다/이르다’의 의미는 구문에 특정한 때나 상황을 나타내는 어휘가 사용되었을 경우에

황을 가리키는 어휘가 놓일 때이다.

쓰였다. 이를 표로써 다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문내용	‘及’의 의미
‘규정’, ‘지시’	‘그리고/그 밖에/또’
‘특정된 행위’, ‘불가한 병립’	‘또는/혹은’
‘특정한 때’, ‘특정한 상황’	‘미치다/이르다’

<구문의 내용과 ‘及’의 의미>

이처럼 내용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及’이 비록 세 가지 유형의 의미를 지녔으나 구문에 사용하고 이해함에 있어서는 혼동이 없었을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이두구문에 대응하는 명률구문에도 ‘及’이 쓰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구문에 따라서 이두구문과 명률구문 간에 ‘及’이 들어 있는 부분이 서로 일치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본고에서는 이두구문의 ‘及’을 이두어가 아닌 한자어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이두구문에 쓰인 ‘及’이라 하여 모두가 이두어가 되지는 않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대명률직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사 ‘及’의 쓰임에 대해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부사 ‘及’은 세 가지 유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중 하나의 의미는 부사 ‘및’은 물론 한자어 ‘及’에도 쓰이지 않은 ‘또는/혹은’의 의미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유형은 내용상 분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부사 ‘及’이 지니는 ‘또는/혹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는 뒤의 연구로 미룬다.

<주제어: 대명률직해, 及, 부사, 중세국어, 현대국어>

참고문헌

강 영. 1998. 「대명률직해 이두의 어말어미 연구」. 국학자료원.  
 고 정의. 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김 두황. 1994. 조선조 초기의 이두 연구—「대명률직해」와 「양잠경험촬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 김 용걸. 2003. 「한문해석방법」. 교학사.
- 남 풍현. 1974. 13세기 노비문서의 이두. 「단국대 논문집」 8, 12.
- 박 성중. 1996. 조선 초기 이두 자료와 그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박 철주. 2003. 대명률직해의 구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박 철주. 2005. 대명률직해의 처격 및 구격 조사에 대한 고찰. 「한글」 269, 5-51.
- 박 철주. 2006ㄱ. 대명률직해 구문의 형식에 대한 연구-소지, 사용, 말소, 빙자, 공납 구문을 중심으로-. 「한글」 271, 5-26.
- 박 철주. 2006ㄴ.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不得’과 ‘安徐’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8, 57-86.
- 박 철주. 2006ㄷ. 「대명률직해의 구문 표현과 현대국어의 구문 표현 차이에 대한 연구」. 609돌 세종날 기념 한글학회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발표 논문. 주최: 한글학회(2006. 5. 13), 83-97.
- 박 희숙. 1985.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배 대은. 2003. 「역대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 요 진우. 2001.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이종한 옮김. 계명대학교 출판부.
- 장 세경. 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 길원. 1997. 「현대 한어허사」. 서울: 학고방.
- 한 상인. 1993. 대명률직해 이두의 어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허 벽. 1997. 「중국 고대어법」. 신아사.
- 홍 순탁. 1974. 「이두 연구」. 광문출판사.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11-448-7896, 010-6368-2656, sunvim@unitel.co.kr

접수(Received): 2006년 07월 10일  
수정필(Revised version): 2006년 09월 15일